

부패영향평가 및 자체 법제심사 결과서

심사대상 :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□ 개정사유 검토

일몰기한이 도달하여 정비가 필요한 행정규칙에 대하여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의거 현행 '유효기간'을 '재검토기한'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사유 검토한 바 특이사항 없음

□ 개정 조문 검토

- 부패유발요인 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헌법·상위법령과의 모순·저촉여부 : 해당 없음
- 고시 조항 상호간 중복·상충여부 : 해당 없음
- 위임범위 이탈여부 : 해당 없음
- 재량권 남용여부 및 실효성 확보여부 : 해당 없음

□ 형식 및 문안 작성 검토

- 별지 서식 위임사항을 조문에 표현(서식 → 별지 제1호서식)
- 조문별 띄워쓰기 등 경미한 사항은 심사안 참조

2025. 6. 11.

심사자 : 혁신행정부무담당관실 이 기 민